제85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방법 등의 변경(강화) ○ 금융영역 간/내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편, 분담금 면제 대상 기준 강화,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선 등 ▶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제3의2	1.비중요
2	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해사안전감독관의 항해 중 지도·감독 실시 (강화) ○ 해사안전감독관이 충분한 지도·감독 시간 확보 등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▶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5조	1.비중요
3	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강화 (강화) ○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질 경력을 추가 반영(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) - 실제 품질 관리 경력(특급 3년, 고급 2년, 중급 1년)이 있는 건설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배치 기준 개선 ▶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	1.중요
4	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건설폐기물 및 중간처리 잔재물의 배출·선별 기준 구체화 및 행정처분기준 신설(신설) ○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배출기준 구체화(불연물 10% 이내)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중간처리 잔재물(殘滓物)의 선별기준 신설(불연물 10% 이내) ▶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,제15조의2	
5	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폐어구 및 유실어구 소유자 부담(신설) ○ 「수산업법」 제78조제3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 소유자 부담은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부담액은 ①폐어구인 경우 해당 폐어구의 수거·처리·보관 비용의 전부, ②유실어구인 경우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·처리·보관 비용의 일부로 하며,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고의만으로 폐어구 및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부담액을 소유자에게 부과하지 않음 ▶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	1.비중요
6	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(신설) ○ 관리주체가 관리실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규정 ▶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	1.비중요
7	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자동차 안전 검사항목 추가(강화) ○ LPG용기 부식과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미설치의 검사판정을 종전에 시정권고에서 적합/부적합 대상으로 강화 ▶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기준 등(신설) ○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방법, 절차 ▶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3.온라인 중고차 광고 시 게재항목 추가(신설) ○ 인터넷 광고 시 직접 매도 또는 매매알선 여부, 매매종사원의 신분 확인을 위한 매매사원증과 매매연합회 홈페이지 주소 게시 ▶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	
8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대차거래 보고의무 부과(신설) ○ 90일 이상 대차시 보고의무 부여 및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잔고 포함 ▶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의31,제6조의36	1.비중요
9	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위탁집배 업무 종사자 제한기간(신설) ○ 강력범죄자의 위탁집배 업무 서비스 종사 제한기간 범위를 최대 20년까지로 규정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동일 설정) ▶우편법 시행령 제4조	1.비중요